심사

원

####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줄기언 병연과구

2024/2/28 통권 1664호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더 많이 환급받는 요령과 계산이유〉

개념, 구분	범위, 계산방법, 이유, 유리 · 불리쟁점					
소득구분	종속적 근로소득 직장인(4대보험 가입자임, 알바생, 일용소득 자는 제외됨) ↔ 독립자유직업은 사업소득임					
정산 이유	평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표준적 상황으로 과세 → 1년 동안 소득자 상황 변경(±)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실제금액 이 연말에 확정·차감되므로 대부분 환급 발생(13월급)					
비과세소득 등	총 연봉 - 비과세 등(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수당 20만원, 해 외근무 100만원 등) ⇒ 총급여액					
소득공제 (필수공통사용)	구간별 소득공제,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1인당 150만원 등): 누진한계세율 따라 올라가 최고세율에서 적용되 므로 고소득층일수록 세금감소 유리)					
특별소득공제	본인 건보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액의 15%~40% 등)					
부동산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40% 등 자금(저축원금 + 상환원리금),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공제					
세액공제 (실지출아님)	자녀세액공제(1명 15, 2인 연 30, 3인 이상 초과부터 연 30만원), 출산공제(첫째 30, 둘째 50만원) : 건당 15% 내외의 일정액이므로 고소득층에 불리함(낮은 세율로 공제액 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낮은 한계세율 적용)					
특별세액공제 (선택적)	손해보험료 12%, 의료비(본인분 전액, 3% 초과분의 15%, 미숙아 등 20%), 월세액(15% 등), 교육비 15%, 기부금 등 10%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CEO 에서이 - 이해익워장 자이언트 빌 게이츠의 예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CFO 회계실무자 조세전문가 정보

- 해외부실채권은 외국환은행의 채권회수면제시점에 대손처리 가능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 정 추진
- 유류세 탄력세육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 견을 듣습니다
-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 향나왔다

#### · CMO: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된 해외게임에 대 해 개발사에게 지급하는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 료소득에 해당안됨 (p.11)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sup>주</sup>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64호 / 주간 9호

2024. 2. 28.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더 많이 환급받는 요령과 계산이유	田川
C E O 에 세 이	자이언트 빌 게이츠의 예언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유통기한 지난 식품 회계처리 - 조세특례제한법 - 일용근로자 급여지급시 계좌 - 교통비 지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문의 - 취득시기 문의	5
눈에맞는절세미인	해외부실채권은 외국환은행의 채권회수면제시점에 대손처리 가능함	6
매일절세재무요점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24.1.1.부터 적용) -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	8 9
직장인Survival	다수결과 만장일치를 경계하라	10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 독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서면국제세원-2594, 2023.03.17) -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인-5631, 2023.08.18)	11
세정뉴스와 해설	R&D세액공제 사전심사···신성장·원천기술 기업 우선 지원	13
마 케 팅 Tax consulting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된 해외게임에 대해 개발사에게 지급하는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안됨	11
세 무 정 보	<ul> <li>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li> <li>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li> <li>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li> <li>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li> <li>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li> </ul>	14 20 22 23 27
회 계 정 보	-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41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20

# 경영진코:

## 자이언트 빌 게이츠의 예언



#### 이해익 원장: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 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겸임) 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오래전 '자이언트(Giant)'라는 헐리웃 영화가 있었다. 1956년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thers) 가 제작한 영화다. 희대의 미녀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호남 록 허드슨 그리고 반항아적 매력의 사나이 제임스 딘이 주연을 맡았다.

텍사스의 대 농장주 빅 베네딕트는 레슬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이 틈에 카우보이 제트 링크는 레슬리에 대한 짝사랑을 키워간다. 제트 링크는 빅의 누이가 유산으로 준 조그만 땅 황무지에서 석유가 쏟아지면서 와신상담 억만장자 석유왕이 되지만 레슬리에 대한 열정은 깊어만 간다. 영화 개봉을 2주일 앞두고 제트 역을 맡았던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기에 더욱 센세이셔널 했다. 광활한 텍사스 농장을 배경으로 쇠퇴하는 농장의 부와 석유를 통한 새로운 부의 출현속에 러브스토리를 믹스한 1950년대식 블록버스터였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지난 1천년간 수많은 황제, 상인, 발명가, 사업가 중 최고의 갑부 50인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천년간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극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말했다.

밀레니엄 초기의 갑부들은 국가통치자이거나 정복자였다. 불세출의 정복자 칭기스칸(1162-1227년)이 여기에 해당한다. 천연자원과 특산품 등의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비잔틴 제국의 바실2세(958-1025년), 앙코르와트 왕국의 창업자 수르야바르만 2세(?~1150년)도 국가 통치자였다. 피렌체의 아메데오 데 페루치(?~1303년)는 무역을 통해 번 돈을 다른 상인들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20세기 인물로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1835~1919년)와 석유왕 존 록펠러(1839~1937년) 그리고 헨리 포드(1863~1947년)가 거부였다. 현대는 빌 게이츠(1955~)가 부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 카네기는 1901년 미국 철강시장의 65%를 지배하는 US스틸사를 탄생시켰다. 이후 카네기 멜론 대학 등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부의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록펠러 역시 1882년 미국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하는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직했다. 그러나 1911년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로

부터 반(反)트러스트법 위반으로 해산명령을 받고 해체되었다. 그 후 그는 자선사업에 몰두했다. 포드는 1913년 조립라인 방식에 의한 양산체제를 확립한 후 1924년에는 시장의 거의 반을 차지했다. 1936년에 설립된 포드재단도 교육진흥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현대는 미국의 달러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시대다. 표준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표준에는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과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이 있다. EU의 유로화와 중국 위앤화와 미미한 신경전도 있지만 달러는 명실공히 막강한 세계의 통화 결 재수단으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골격이다. 세계 모두가 달러 때문에 울고 웃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빌 게이츠는 MS사의 회장 겸 CEO(Chief Executive Officer)다. '소프트웨어의 황제', '세계 최고의 갑부', '소프트웨어업계의 악마', '독점 사업가', '최대자선사업가' 등 찬사와 비난이 함께 따라 다니는 그는 현대 IT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지구촌 반수 이상의 인류가 그의 일거수일 투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그는 정복자다. 당시 지구의 반 2억 인구를 지배한 칭기스칸 보다 더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의 성공에는 세 가지 혁신이 뒷받침됐다.

첫째, 무겁고 큰 하드웨어보다 작고 가벼운 소프트웨어가 승리한다는 신념의 실천이 있었다. 당시 거인 IBM과의 거래가 그랬다. 둘째, 단기적 이익보다 인기(표준화)를 중요시했다. MS의 소프트웨어를 헐값으로 장착시켜 당시 소프트업계의 폐쇄적 관행을 깨버렸다. 셋째, 기술보다 장기적 사업 모델과 장래 시장수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전개했다.

미국 법무부가 몇 해 전 "소비자들의 권리를 우선 고려해 MS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세기의 재판으로 알려진 시장독점을 둘러싼 US vs MS 소송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그가 얼마나 독점적으로 시장의 이익을 획득하고 또 얼마만큼의 재산가라는 화제꺼리도 그의 엄청난 기부활동과 미국식 시장경제 논리에 파묻힌 것이다. 오로지 오늘날 IT산업의화두가 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의 '예언'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이 있을 뿐이다.

#### 법인등기상 상호명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변경시기 등

- 법인등기상 상호명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지체없이 변경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변경을 몇일뒤에 했을 경우 지체된 기간동안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 10.10일에 등기상 상호변경 후 10.13일에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 신청할 경우 3~4일간의 지 체된 기간에 대한 문제??

세법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과 관련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습니 다. 따라서 3~4일간의 지체기간에 대한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 유통기한 지난 식품 회계처리

- 안녕하세요 유통기한 지난 식품에 대해 폐기 후 영업비용(재료비)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유통기한 지난 식품 폐기와 관련하여 영업비로 처리 문제는 세법판단사항이 아닙니다. 원가에 반영할 지의 여부는 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어 결정하실 내용입니다.

#### 인테리어비용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일반음식점 비품외 인테리어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 인테리어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통합투자세 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 급여지급시 계좌

당사는 일용근로자 고용후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급여 지급 요청한 계좌는 사업자우대계좌 (사업용계좌)인데, 이 경우 예금주가 근로자 이름과 일치하면 지급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 지급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제대로 제출하면 사업자우대계좌 이기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 교통비 지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문의

출장 교통비(부가세 포함)를 출장 요청 회사에서 지원할 경우, 청구 세금계산서 금액은 총 교통비 금액 +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취득시기 문의

지를 해외법인에 대해 당사가 90%, 대표이사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중 대표이사의 지분을 전부 당사가 인수 하였습니다.

이때 질문인 즉, 당사가 대표이사에게 지분 대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봐야 하는지, 현지 해외법인 지분 변동에 대한 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취득일로 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정산한 날이 양도일 및 취득일로 인정됩니다.

# 경리인코너

# 해외부실채권은 외국환은행의 채권회수면제시점에 대손처리 가능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수출과 수입에 한정되었던 외국기업들과의 거래가 직접·간접투자 등으로 그 형태가 한층 다양화되고 빈도수도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외국기업과의 거래의 증가는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화채권의 부실화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큰 틀에서 보면 외국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화부실채권도 국내에서 발생된 부실채권과 동일하게 세무처리하면 되는데, 외화부실채권의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외화채권도 국내발생 채권과 똑같이 대손반영함

현행 법인세법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열거규정 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대 손처리 및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화채권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없으므 로 외화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수출대금 · 해외대여금 등의 외화채권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등과 같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회수불능 상태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반영하면 된다.

보통 미수관련 소멸시효인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한다. 국세청에서는 해외매출채권도 국내채권과 동일하게 대손처리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관련예규는 다음과 같다.

#### ♣ 법인세과-698, 2009.0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해외 현지법원에 의한 청산절차인 종결시 대손처리 가능

외화 매출채권도 국내에서 발생된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지만, 채무를 지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자국에서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즉, 해외의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까지 기다렸다가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해외 공관장의 회수불능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해당 회사에서 해외 채무법인의 부도 · 도주 · 행방불명 또는 못받을만한 불가항력적 사실을 조사한 뒤 해외 현지한국영사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 ♣ 법인46012 - 1694, 1998. 6. 24

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청산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 및 보증채무대위변제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지법인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출[내급히수 면제 승인받은 경우도 [내손처리 기능

해외 현지의 채무법인의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와 더불어,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해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 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 받는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수출대금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 행의 장에게 채권회수면제 신청을 하고 그 사유가 적절하다고 승인받는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면제승인을 받으면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바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

#### ♣ 법인46012 - 3119, 97. 12. 3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관리법」제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현재는 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임)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365

##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灅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24.1.1.부터 적용)

공제율(%)	기본공제(확대)	+추가공제(신설)	최대공제율
대기업	5(+2)	10	15
중견기업	10(+3)	10	20
중소기업	15(+5)	15	30

## /si --- 주식 관련 세금의 국제 비교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주식양도세 세율	15~20%	10~20%	20%	대주주에 한해 20 · 25%
증권거래세 세율	×	0.5%	×	0.18% (농어촌 특별세 포함)

##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

내용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l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과세방식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 글로벌 최저한세 준비

명목세율	<ul> <li>저세율 국가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해외 국가의 명목 법인세율을 고려해야 한다</li> <li>한국 대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들 중 헝가리, 아일랜드, UAE, 홍콩, 싱가포르 등은 대표적인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다</li> </ul>
익금불산입 · 손금 산입의 영구적 차이	• 해외 자회사가 속한 국가에서 해외 자회사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 손금산입의 영구적 차이와 관련해 세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저세율 국가에 속할 확률이 높다
세액감면 · 세액공 제 · 보조금	<ul> <li>한국 대기업의 해외법인 투자 시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에 세액감면을 부여하거나 대규모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li> <li>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세율 국가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li> </ul>

## 粤

## **2024 경제정책방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내용**

구분			증가분		
(단위 :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경기군
일반기술	1→3	5→7	10 → 12	T	3→10
신성장 · 원천기술	3→6	6 → 10	12 → 18		3 -> 10



### 다수결과 만장일치를 경계하라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이나 의결을 도맡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의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 이대로 승인하겠습니다"라며 가결을 선언한다. 조직 내에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이에 비하면 무기명 투표와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회의는 매우 민주적으로 보인다.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가결하는 방법과 달리 무기명 투표 방법은 개개인이 의사표시를 하기 쉬운데다 다수결이어서 민주적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다수결 방법 또한 의장에 의해 민주적인 결정처럼 교묘하게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의사진행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직 회의에서 만장일치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만장일치는 동조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 채 엉뚱한 결론이 내려지거나 실수가 빤히 보이는 아이디어가 채택되기도 한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만장일치를 이상으로 삼는 회의 분위기가 존재한다.

만장일치는 매우 미심쩍고 위험한 결의방식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검토했는데 모든 사람의 견해가 일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만장일치를 고집한다는 것은 반대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다. 이런 분위기라면 제안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게 될 수도 없다. 이는 조직의 리스크 관리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최 신 판 례 예 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된 해외게임에 대해 개발사에게 지급하는 구입대가는 국내워천 사용료소득에 해당안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 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 징수여부 문의

서면국제세원-2594, 2023.03.17

#### ▮질 의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국조2012-334, 2012.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을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 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 인됨 사전법규법인-1264, 2023.03.22

#### ▮질 의

•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매각손익의 익금(손금)산입 여

####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 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 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서면법인-978, 2023.05.26

#### ▮질 의

•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 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고용증대세액

#### 공제 추가공제액

#### ▮회 신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 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과세연도에는 29세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당초 적용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 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청년등상시근로 자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 연도에 대해서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 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 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인-5631, 2023.08.18

#### ▮질 의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

- 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질의법인과 임차인은 쟁점 임대차계약 상월 임대료를 6백만원으로 인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쟁점 변경 임대차계약)
- '22.9.7. 질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 '22.10.28. 임차인 개인A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파산절차 진행중이며' 22.11.02. 질의법인은 개인A에게 미납 임대료\*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 \* '22.11월 질의법인의 개인A에 대한 임대료 미수 금은 391백만원임

#### 질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규정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산정 시 회수기일의 의미
- (갑설)채권발생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를 받기로 한 날
- (을설) 동일 채권의 최종 입금일, 마지막으로 임대 료가 입금된 날

####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이하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R&D세액공제 사건심사··· 신성장·원천기술 기업 우선 지원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우선 지워하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안심하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 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 지위기업도 그대로 우선 지위 받는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바로 활용되도록 신청 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 한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조기처리 가능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는다. 또한, 결과 통지서를 받기 전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시를 신청한 기업은 2440곳으로 제도가 첫 시행된 2020년(1547건)에 비해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 원실)를 통해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신청해야 심사결과를 신고내용 에 반영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맞춰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 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누리집에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게재하고, 오는 23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ESG 공시기준, 빠르면 3월 공개… "국내 산업 특수성 반영"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될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ESG) 공시 기준 초안이 이르면 올해 3~4월 발표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준 비기간을 달라'는 기업 요청을 수용해 2026년 이후로 도입 을 여기했다.

1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내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는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ESG 공시기 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투자자?기업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기업 자율로 공개됐던 ESG 사안을 국내 공시기준에 맞춰 비교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이번 간담회 또한 금융위가 마련 중인 국내 ESG 공시기 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같은 선진 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 등이 쉽지 않 은 구조적인 특수성이 있다"며 "국내 산업의 특수성이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기업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목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 국세청, 2024. 2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 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하였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 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 · 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 □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 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다양한 심사사례와 온라인 설명회를 참고하시고,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시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1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방법

- □ (신청인)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한)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기한에 임박한 신청의 경우 결과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이후라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1)심사 진행상황 확인, 2)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3)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능이 있습니다.
- □ (제출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연구노트」, 「급여대장」, 「재료비 집행내역」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뿐만 아니라 보완서류도 홈택스로 제출 가능하며, 연구소 인정서, 지식 재 산권 등록자료 등 국세청이 자체 수집 가능한 자료는 신청 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

□ (심사 내용) 국세청은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세법상 연구개발 해당여부와 비용 적정성, 두 가지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1 연구개발활동 심사

-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심사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9개 분야별\* 전문 심사관\*\*이 검토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 (9개 분야)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화학, 에너지시스템, 토목·건축, 디자인, 바이오
  - \*\* 다년간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담팀 구성

#### 그 비용 심시

- 신청인이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정한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 대상)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 과제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 개발활동 여부 심사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의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서면심사 원칙)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 의하에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모든 문서는 암호화하고 열람 권한을 심사 담당자로 제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보보안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서류제출 시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구체적 수치 등은 가리거나 제거 후 제출 가능
- □ (결과 통지) 결과통지 전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심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 완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 신속·편리하게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반영 가능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혜택

- □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 를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 \* 단,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사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② 사전심사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 또한, 전담팀이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컨설팅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구비를 도 와드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완사항 등을 알려드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4 금념도 개선사항

- □ (우선처리 확대\*) 지난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게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 유형 중 하나로,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0% (재확인 시 10%)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증빙으로 사전심사 결과통지 서 제출가능
    - \* '사전심사 우선처리 확대'는 경제활력 제고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의 민생경제지원 분과 과제 중 하나입니다.
  -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1)조기처리 가능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2)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해드리며, 3)심사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중간통지 의무화)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 지연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해 드립니다.
- □ (온라인설명회 확대) 작년부터 기업의 실무자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사전심사제도 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는 이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 ('23년) 2회 실시 → ('24년) 2. 23.(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실시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사전심사 제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가이드라인」과 심사사례를 보완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에 게시하는 등 도움자료를 개선하는 한편.
  -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납세자 대상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 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지원4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4-204-3923~33)

#### 참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

#### 

- □ 사실관계
- A기업은 차별화된 유효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지출한 인 건비와 재료비 등 ○억원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 → (쟁점)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고 시험 등 평 가를 진행한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심사결과
-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시험분석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한 내역 등 제품 개발 과정의 체계성 및 재현 가능성이 확인되어,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적격 판정

#### 사례 ② 인정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 활동



- □ 사실관계
- B기업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의 공정을 단축시키는 통합공정 과제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 → (쟁점) 기존 생산공정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공정을 개발하는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심사결과
- 기존의 생산공정을 통합공정으로 변경하고 신규 공정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품의 설계 변경, 완성도를 검증하는 체계적인 활동은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여 적격 판정

# 사례 ③ 불인정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 제품 구입 원제작사 지료·기술지원 교육제공 구입처 일상적인 지원활동

#### □ 사실관계

- C기업은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회사에 판매하고 고객사에 대하여 자료 및 기술지원과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심사 신청
  - → (쟁점)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심사결과

• 고객사에게 제품에 대한 자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활동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으로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

#### 사례 ④ 불인정 공개된 문헌을 단순 복제한 연구개발 활동



#### □ 사실관계

- D기업은 자체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억원에 대해 심사 신청하고 관련 증빙으로 연구보고서를 제출
  - → (쟁점) 공개된 문헌을 단순 인용 혹은 복제하여 수행한 자체 연구개발활동의 적정 여부

#### □ 심사결과

- ○국세청 전담팀은 D기업의 연구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된 갑법인의 연구보고서, 특허명세서 등의 내용을 단순 복제\*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 신규성 및 독창성 부재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
  - \*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연구 결과를 단순 인용 혹은 복제하는 것도 부적격 대상임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국세청, 2024.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 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Ę	변 0	2월 16일 (금)	2월 19일 (월)	2월 20일 (화)	2월 21일 (수)	2월 22일 (목)
	달		러	(USD)	1333,20	1333.00	1333.80	1337.90	1335.00
일	본		엔	(JPY)	889.48	888.05	888.37	892,20	888.08
영	국 파	운	드	(GBP)	1680.50	1679.91	1679.59	1688.70	1687.31
캐	나 다	달	러	(CAD)	990.31	988.47	988.40	989.24	988.93
홍	콩	달	러	(HKD)	170.49	170.43	170.54	171.07	170.70
위	안		화	(CNH)	184.49	184.64	185.07	185.63	185.65
유	星		화	(EUR)	1436.59	1436.71	1437.57	1446.00	1444.80
호	주 주	달	러	(AUD)	870.11	870.85	871.77	876.06	874.69
싱	가 폴	달	러	(SGD)	990.67	989.86	990.97	995.57	993.27
말리	레이시 0	링 기	1 트	(MYR)	278.88	278.84	278.63	278.87	278.47

#### 참고

#### 간이과세 제도 개요

- □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 (특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
  -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구 분	일반과세자(개인)	간이과세자
ㅇ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공급대가(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세율(10%)
ㅇ 과세기간	6개월 단위 제1기(1~6월), 제2기(7~12월)	1년 단위
o 신고·납부	연 2회 확정신고·납부 * 연 2회 예정고지·납부	연 1회 확정신고·납부 * 연 1회 예정고지·납부
o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연매출 48백 미만) 영수증만 발급 (연매출 48~80백)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o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미적용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기획재정부, 2024. 2

정부는 '24.2.29.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triangle 25\%$ , 경유·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triangle 37\%$ ) 조치를 '24.4.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2.19 (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및「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 <del>\lambda</del> T1 \lambda \lam									
	이희 저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4.30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0%	△30%	△37%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 PG)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triangle 205$ 원/리터( $\ell$ ), 경유  $\triangle 212$ 원/리터( $\ell$ ), 액화석유가스(LPG)부탄  $\triangle 73$ 원/리터( $\ell$ )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국내 유가 추이 >

(단위: 원/ਿ)

(다위 · 워/9)

	'22년	'23분기	2분기	7월	B월	<u></u> 밀월	10월	11월	12월	'24.1월	2.15일
휘발유	1,813	1,578	1,617	1,585	1,717	1,769	1,776	1,684	1,601	1,569	1,615
경유	1,843	1,607	1,467	1,396	1,573	1,667	1,690	1,628	1,526		1,518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1,082	1,000	979	905	870	895	940	971	971	971	971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19.~20),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27. 예정) 등을 거쳐 '24.3.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들습니다

- 국세청, 2024. 2

□ 지방세법 시행령(21.12.31 신설, 2023.1.1. 시행)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10일 이상 소유자·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 □ 또한,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직권으로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인하할 수 있다.

#### <의견제출로 상가 시가표준액이 인하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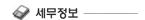
- A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지하3층/지상8층)은 대부분이 공실로 수 년째 방치되어 상가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해당 건물 내 상가를 소유중인 B씨는 대다수가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전혀없는 것처럼 ¬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B씨는 상가의 공실상황 등 입증서류와 함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의견을 A시에 제출하였다.
- A시는 시가표준액 의견이 제출된 B씨의 상가 외에도 ㄱ상가건물 내 공실 정도가 유사한 다른 소유자의 상가까지 전수조사하고, 주변 실제시세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지하층은 50%, 지상층은 60% 수준으로 상가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당초 70억 원에서 총 29억 원 인하된 41억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B씨를 비롯한 상가 소유자들은 전년 대비 50~60% 수준으로 감액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 이 되는 금액이다.

- 토지나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 되며,
-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하고 있다.
- □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 (위택스) 지방세 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
    - \*\* (이택스)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 □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9일 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 관할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다.
    - \*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의 협의(4월)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로 운영
- □ 한편,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34,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840억 원을 인하 한 바 있다.
-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두었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였다"라며,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1 - 지방세 시가표준액 개요

- □ 시가표준액 정의
-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6월 1일 고시하는 가액
- □ 시가표준액 기준 · 결정
  - 주택·토지는 국토교통부의 기준(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에 따라, 그 외 건축물(오피스텔·오피스텔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산정하여 결정·고시(「지방세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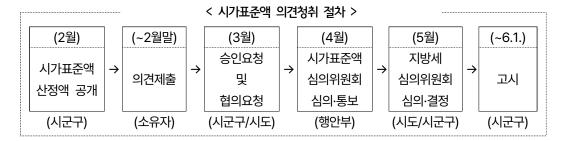
	구 분	현행 시가표준액	결정권자
	주택 (건물 + 부속 토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 (표준주택) 국토교통부장관(매년 1월말 공시) (개별주택) 시장·군수·구청장(매년 4월말 공시) •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매년 4월말 공시)
ㅂ	토지 (주택 부속 토지 제외)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 국토교통부장관(매년 1월말 공시) •개별필지: 시장·군수·구청장(매년 4월말 공시)
부 동 산	오피스텔 (부속 토지 제외)	시가표준액 <u>표준가격기준액</u> × 각종지수(용도·층) ×면적×가감산율	<ul> <li>표준가격기준액         <ul> <li>행정안전부장관(매년 12월말 고시)</li> <li>√의견청취 (2월말까지)</li> </ul> </li> <li>사가표준액: 시장·군수·구청장(매년 6월 1일 고시)</li> </ul>
	오피스텔 외 건축물 (부속 토지 제외)	시가표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각종지수(구조·용도·위치) ×잔가율×면적×기감산율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행정안전부장관(매년 12월말 고시)



#### 참고 2 -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개요

#### □ 의견청취 절차

- (개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건 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
- (의견제출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 (제출방식)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제출
- (제출시기) 2월말까지 의견제출
- (변경·고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5월)를 거쳐 고시(~ 6.1.)
  - 시가표준액 산정액의 20%를 초과하는 협의요청 건은 행정안전부가 전문기관 검토\*, 시가 표준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4월말)
    - \* 지방세연구원에서 시가표준액 산정액근거, 변경 사유 등을 종합 검토
    - \*\* 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 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설치 등)



####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 (2021.12.31. 신설, 2023.1.1.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
  -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소 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산정한 시가표준 액을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

##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 국세청, 2024. 2

- □ (대응현황) 국세청은 지난해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23.11.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1차 조사 진행상황: 현재까지 431억원 추징·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 2차 조사 선정유형: ①세무조사 119건 ②자금출처조사 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 건
  -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 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하였습니다.
- □ (기관협업)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였습니다.
  -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
     으로 분석·선정(74건)하였고,
  - 그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대응 현황

- □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였고,
  - 국세청 자체 TF(단장: 차장)를 신속히 설치하여 '23.11.30. 우선적으로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하였습니다.

#### / 1차 불법사금융 조사성과 /

세무조사			エレコスナリエコ	체납자
사채업자	중개업자	추심업자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
294억 원	40억 원	67억 원	19억 원	11억 원

- (세무조사)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사채업 자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401억원을 추징하였으며, 10건에 대해 범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별도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여 80억 원의 조세채권 확보
- ▶ 【조사사례】 조직을 구성하여 악랄하게 불법 추심하고 초고금리 이자는 신고누락한 사채업자
-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천여회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 하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0억원 추징
- (자금출처조사)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자들을 적발하여 19억원을 추징하였고,
- ▶ 【조사사례】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사채업자
- 저신용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고, 이자수익은 현금으로 은닉하면서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자를 적발하여 증여세 등 0억 원 추징
-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 거주지 탐문 등으로 끈질기게 추적하여 1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 【조사사례】 주소지 위장이전하여 추적을 회피하고, 고액체납과 사치생활을 계속한 불법사채업자
- •세무조사로 00억원 추징받고 전액 체납한 자에 대해 생활실태 확인하여 추적한 결과 現주소 지가 아닌 前주소지에서 실거주하며 사치생활하고 있었고,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 품, 현금 등을 압류하여 총 0억원 징수

□ 또한, 오늘 총 179건(1차 조사 대비 16건(10%) 증가)에 대해 추가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 하였습니다.

#### / 2차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 /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119건	34건	26건

-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기소자료를 제공받는 등 정보공조를 강화하였고, 세무조사 119건 중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한 조사선정이 74건에 달하여 1차에 비해 비율이 크게 증가(1차 30%→2차 62%) 하였습니다.
- 1차 조사에서 금융추적과 제보 등을 통해 밝혀낸 전주(錢主)를 이번 2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끈질기게 추적하는 한편,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더불어,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 보다 가 한 한 하루는 기밀한 협업

□ 지난 불법사금융 민생간담회를 계기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한 관계 부처들은 범정부 TF(국조실 총괄)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 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였습니다.

#### ① 검 찰:기소자료 등 정보공조, 영장 청구 법률지원

- □ 이번 2차 조사는 유관기관과 정보공조를 강화하여 검찰로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받았습니다.
  - 이는 검찰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한 사건 중 기업형 불법사채 범죄이거나, 규모가 크고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로서 국세청은 이들 중 조세포탈혐의가 있는 2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 ▶ 【선정사례】 영세상인에게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하며 기소된 미등록 대부업자
- 수익을 축소하기 위해 등록업자들과 공모하여 장부조작한 사실을 공소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선정하였으며, 공모자를 포함하여 신고누락한 수익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
- 해당 조사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은 더욱 엄정히 범칙조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불법사금융 사범의 조세포탈 등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 □ 또한, 조직적 사채업자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큰 악질적 사금융업자에 대해 검찰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 1차 조사에서 소상공인에게 고리 이자를 수취하고 재산을 은닉한 2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계좌 목록, 차명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포렌식을 실시함으로써 착수시점부터 관련 탈세증빙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② 경찰청:수사자료 등 정보공조, 경찰관 동행 등 조사요원 신변보호

- □ 경찰청으로부터는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그 일당 수백명의 명단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았고, 이를 활용하여 1차 조사 6건과 2차 조 사 2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 ▶ 【조사사례】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살인적 고리 이자를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 •지인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하면서 연 3,650%의 살인적 고리이자 수익은 다른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한 사실을 범죄일람표로 확인하여 선정하였고, 광범위한 금융추 적을 실시하여 0억원 과세 및 고발 조치
  - ▶ 【선정사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착취한 조직적 불법사채업자
  -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최고 31,633%의 이자를 불법추심한 수사내용을 확인하여 선정하였고, 수 익의 실제귀속을 밝혀 과세하고, 차명 은닉한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 □ 또한, 조직적 사채업자 등 조사요원의 신변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동행, 조사현장 순찰 강화 등 인력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③ 금융감독원: 피해접수사례 등 정보공조

- □ 금감원으로부터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천여건, 대출 중개 플 랫폼 단속 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공받았습니다.
  - ▶【조사사례】대환대출로 유인하여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자의 신고서를 기초로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탈루혐의 분석하여 선정하였고, 본인 및 연결계좌 00개를 끝까지 추적하여 수수료 누락 00억 원 적출
  - ▶ 【선정사례】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대부중개 플랫폼
  - 개인정보 판매로 단속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선정하였으며, 일시보관을 통해 회원명단을 확보하여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보유한 부동산 등에 확정전 보전압류 실시할 예정
  -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단초로 국세청 자체 DB를 활용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단속 정보에 기초한 탈루혐의 분석 등을 통해 1차 조사 18건,

2차 조사 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 4 국세청: 검찰 범죄수익 환수 지원, 경찰수사 금융추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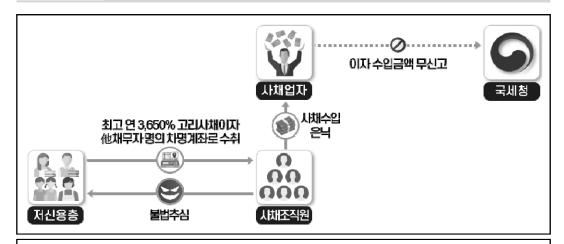
- □ 국세청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등 협조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 고유의 불법사금융 척결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검찰의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업무 시 국세청의 인력,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기 로 하였으며.
  - 경찰에는 국세청의 금융조사에 특화된 업무역량을 발휘하여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필요 시 수사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방향

- □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 추적, 불법 사채업자 문답, 피해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 안을 적극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현실태와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범정부 TF 회 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 全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하여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 특히, 아직 진행 중인 1차 조사의 경우 복잡한 금융거래 추적, 범칙조사 전환 등으로 조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2차 조사도 1차 조사를 통해 밝혀낸 전주 등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 없이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 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4.6.) 동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붙임 1 - 주요 조사사례

## 조사사례 1 저신용층을 상대로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세무조사)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채조직(5명)을 만들고,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
- ▶ 다른 채무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은닉(20~30만원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거 나 이자를 할인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확보)
- ▶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

#### □ 기관 협업

○ 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 료 제공받아 조사대상자 선정

#### □ 주요 조사내용

○ 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럿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하여 법정금 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이자수익 00억 원을 전액 신고누락

#### □ 주요 조사결과

○ 사채업 수입누락 등 00억 원 적출. 소득세 등 0억 원 추징

○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

#### 조사사례 2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 (세무조사) 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하고 신용도를 일시에 상향시킨 후 1·2금융권으로부터 기존 대출규모보다 큰 대출이 실행되도록 알선해주면 서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편취

#### □ 기관 협업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에 기재된 불법사금융 혐의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 정보 를 국세청 내부 DB와 대사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조사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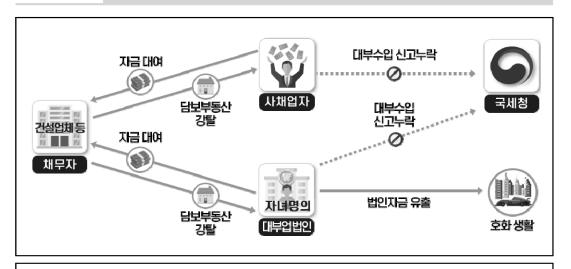
#### □ 주요 조사내용

-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신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받고, 출장비 등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 도 수취
  - 불법 편취한 수수료는 현금 혹은 가족·지인 등 차명계좌 00개로 수취하여 수익 은닉하고. 신고누락

#### □ 주요 조사결과

○ 계좌 00개를 끝까지 금융추적하여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입 신고누락 등 00억 원 적출

#### 조사사례 3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 (세무조사) 한 악덕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주로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 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부동산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
- ▶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수입은 신고누락하면서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 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등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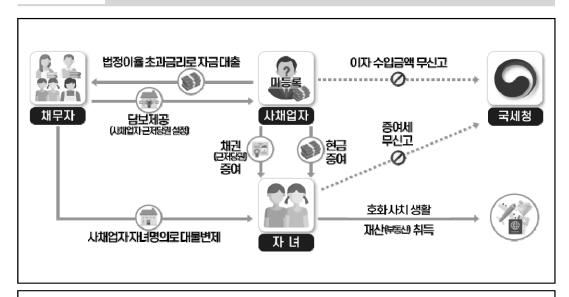
#### □ 주요 조사내용

- □□□는 주로 부동산 등 근저당권 설정한 후 자금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이자수익은 신고 누락하였으며,
  -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대부업 영위하면서 이자수익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회계 처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 □□□는 수억원이 넘는 예금 계좌를 00개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이익으로 호화생활 영위
- □□□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부업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로 활동하며 수취한 이자수 익도 신고누락

#### □ 주요 조사결과

- 사채수입 신고누락 등 000억원 적출, 00억원 추징
- 범칙조사 전환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일실 최소화

#### 조사사례 4 저신용 채무자에게 자금 대여 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 (자금출처) 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는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법정 최고이 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이자수익을 은닉함
- ▶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불법 사채업자인 부친이 은닉한 소득을 증여받아 해외여행,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 영위

#### □ 주요 조사내용

- □□□는 ○○ 지역에서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고율의 이자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은닉한 미등록 대부업자
  -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을 편법증여
- 자녀는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외에도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오피스텔 0개를 추가 취득하고 00회에 걸친 해외여행, 고가의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 □ 주요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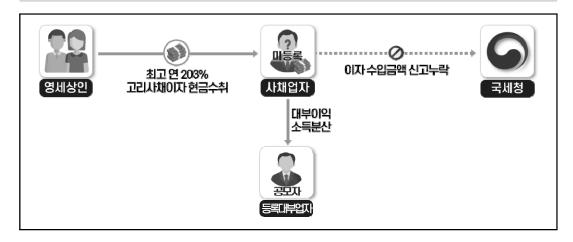
○ 편법증여 등 00억원 적출, 증여세 등 0억원 추징

# 조사사례 5 9천 % 고금리 불법 이자소득으로 명품구매 등 호화생활하면서 재산추적을 (체납추적)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위장 이전한 고액체납 사채업자

-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 영위
    -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00억원 부과받은 후 전액 무납부 체 납
  -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하여 사 용 중인 정황을 확인
- □ 재산추적조사 결과
  -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이전하였으나, 실제는 前주소지에서 배우자·자녀 와 거주하고 있음을 생활실태 탐문을 통해 확인
  -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하여 0억원 채권 확보하고 현재 공매 진행 중
  - 체납자 수색 이후, 현금징수 0억 원을 포함 총 0억 원 징수

# 붙임 2 - 주요 착수사례

# 착수사례 1 급전이 필요한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세무조사) 불법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
- ▶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영세상인 2천여명, 9천여회, 4백억원대 불법대출)
  - \* (예시) 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 원 공제, 60일 후 180만 원 수금
- ▶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

#### □ 기관 협업

- 검찰로부터 인적사항,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 기소자료를 협조받아 조사선정
  - 공범 등록대부업자 2명 자료도 추가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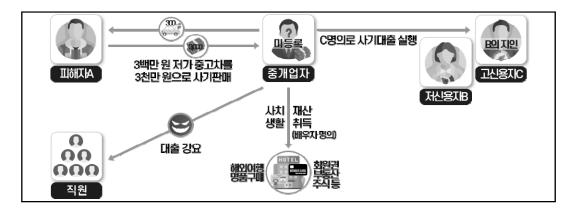
#### □ 주요 탈루혐의

- 영세상인들로부터 수취한 불법이자 00억 원 전액 신고누락
  - 대포폰 번호로 광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하여 수익을 은닉하고, 대출내역은 50%만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조사) 대비
- 정상적인 대부업 형태를 가장하기 위해 공모한 등록 대부업자에게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배 분하여 소득분산

#### □ 조사방향

-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 실시
- ㅇ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 선정
-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수시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 추진

# 착수사례 2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제3자 대출 사기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벌어들인 미 (세무조사) 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은 직원 30여 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 도 진행
-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가능액이 크게 확대된다고 유인하여 중고차를 사기로 판매한 뒤 차량 대금만 갈취
- (제3자 대출 사기) 저신용자에게 지인 중에 고신용자가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하여 고신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고신용자 명의로 사기대출 실행
- (직원 대출강요)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고액대출을 강요하여 사채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듦(직원 0명 극단적 선택)
- ▶ 고액현금거래(CTR) 추적을 회피하고자 여러 번 소액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득은닉

#### □ 기관 협업

- 경찰에서 수사완료된 사기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세포탈죄로 고발·기소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 협업
  -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지방청 정예 조사팀을 투입하고, 공모혐의가 있는 대부업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치밀한 금융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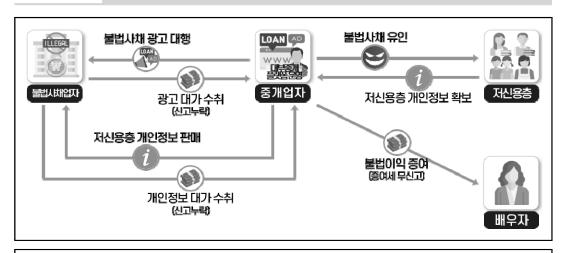
#### □ 주요 탈루혐의

- □□□은 중고차 전환대출, 제3자 대출 등의 방법으로 벌어들인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와 직 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대출해 주고 수취한 이자수입 등 00억 원 신고누락
- □□□의 일가는 신고된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여행, 명품구매 등에 매년 0억원을 지출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상장 주식, 호텔 회원권 등 재산을 취 득하여 불법사금융 수익 은닉

#### □ 조사방향

- 본인, 가족,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 실시(자금출처조사 병행)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추진

# 착수사례 3 신용 취약계층을 약탈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세무조사) 어 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사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를 대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으며, 이러한 불법환경 조성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 \* (불법행태) 100만 원을 1주일 뒤 140만 원으로 상환, 미상환시 매주 28만 원 추가 수취(연 1,468%)
- ▶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무단 판매

#### □ 기관 협업

○ 금융감독원이 적발(지자체, 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점검)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자료를 협조받아 조사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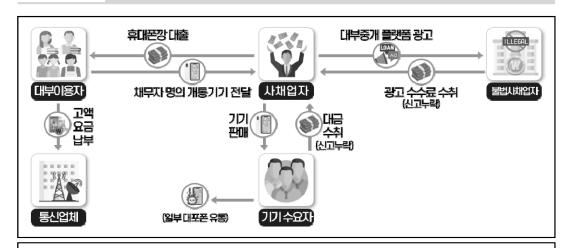
#### □ 주요 탈루혐의

- 대부분의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를 신고누락
- 대부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개인·신용정보 대가 신고누락
- 중개수수료 등 불법소득을 배우자에 무상증여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

#### □ 조사방향

- 조사착수 시 회원명단, 광고대행 관련 계약서, 매출관리 원시 장부 등을 확보하여 수수료 매출누락 규모 확인
-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 선정
-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 실시

# 착수시례 4 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세무조사) 사채업자에게 광고수수료 수취한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를 중 개하거나 동일 수법을 이용하여 직접 대부하고 불법소득을 향유
  - \* 채무자 명의 휴대폰 개통 → 현금(대출금) 수령 → 휴대폰을 대부업자에게 전달 → 채무자는 휴대폰 요금 납부
- ▶ 휴대폰깡 이용자들은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차입금(법정이자 포함) 보다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일부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불법유통 되어 범죄에 악용
- ▶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출장비 등 명목으로 우회 수취

#### □ 주요 탈루혐의

- 휴대폰깡 수법으로 수취한 불법소득과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취한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
  -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전액 무신고
  - 현금수취한 불법소득을 자동화기기(ATM)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닉
- 일부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고가 외제차 및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 □ 조사방향

- 조사착수 시 회원명단, 불법 대부업자와의 대부중개 계약서, 매출관리 원시 장부 등을 확보 하여 수수료 매출누락 규모 확인
- □□□와 고액 거래가 확인된 他 휴대폰깡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 실시
  - \*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소비)이 00억 원으로 확인되어 자금출처조사도 실시

#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 국세청, 2024. 2

#### < 주요 내용 >

□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구분	점검사항	
재무 사항 (12개)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등	5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 의견, 운영보고서 공시 등	
	·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회계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시간 등, 회계감사인 변경 등	5
비재무 사항 (2개)	·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 합병등의 사후정보	1

- □ (향후 계획)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 심사를 강화할 예정
  -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를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충실한 정보
     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 배경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4.4.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
- □ 기업은 중점 점검항목에 유의하여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는 충실한 정보 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 Ⅱ 중점 점검사항

### 1 재무사항(12개 항목)

####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 (선정사유)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 적인 정보
- (점검내용) **①**요약(연결)재무정보, **②**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③**대손충당금 설정현황, **④** 재고자산 현황, **⑤**수주계약 현황

#### 2022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례

- ① 종속·관계기업 등의 투자주식 평가방법(원가법, 지분법 등) 미기재
- ②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 현황 등 공시서식 요구사항 미기재
- ③ [투입법 적용 기업의 경우] 매출액 5%이상 계약별 진행률 등 미기재

#### ②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개 항목)

- (선정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 도
- (점검내용) ①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②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 2022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례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사업보고서에 미기재

#### ③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 (선정사유) 회계감사 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상 중요정보가 사업보고서에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
- (점검내용)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②감사보수 및 시간 등, ❸내부감사기구·감 사인 간 논의내용, ④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❺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곳시 여부

#### 2022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례

- ①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사항을 사업보고 서 해당 부분에 미기재
- ② 회계감사인 변경시 변경사유 미기재
- ③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감시기구(감사위원회 등)간 논의내용 미기재

### 2 비재무사항 (2개 항목)

#### ①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 (선정사유) 직접금융 자금[주식,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
- (점검내용) ①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②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사유, ③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내용 점검
  - \*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한 자금사용목적, 주요사항보고서상 자금조달목적과 사업보고서 기재 내용 비교점검 포함

#### 세부 점검내된

- ① 자금사용 계획과 실제 자금사용 내역을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 ② 자금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내역간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 ③ 미사용자금 운용내역의 종류 기재여부, 운용상품의 전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작성기준일 현재 투자금액의 원금(재무제표상 평가금액이 아님에 주의)을 운용금액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 2 합병등의 사후정보

- (선정사유) 최근 스팩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기운데 합병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
   은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
- (점검내용)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①+②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③차이 발생 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실적 사후정보를 점검

#### 세부 점검내용

- ①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를 이용하여 1차연도 및 2차연도의 영업실적(매출액, 영업이 익, 당기순이익) 예측치, 실제치 및 괴리율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여부
- ② 괴리율을 작성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③ [괴리율 10% 이상 발생시] 항목별(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로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 - 〈유의사항〉 -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 보고서를 작성·제출
- □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

## 향후 추진계획

- □ (점검실시) ' 24.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 \* 과거 점검시 미흡사항 다수 발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
- □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4.5~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
  -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
     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
  - ☞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 붙임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14개 항목)

# T 재무공시사항(12개 항목)

####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공시서식 §5-1-1, 2)		
2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서식 §5-5-1-1)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서식 §5-5-2)		
4	재고자산 현황 (공시서식 §5-5-3)		
5	수주계약 현황 (공시서식 §5-5-4)		

## ②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공시서식 §5-3-2)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공시서식 §5-3-1 등)

### ③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공시서식 §5-2-1-①-1, §5-5-1-4)
2	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및 시간,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 (공시서식 §5-2-1-①-2, 3)
3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서식 §5-2-1-①-4)
4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세부정보 및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공시서식 §5-2-1-③)
5	회계감사인의 변경 (공시서식 §5-2-2)

# 비재무공시사항(2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시서식 §5-7-3)
2	합병등의 사후정보 (공시서식 §11-4-8)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 금융위원회, 2024. 1

2.13일(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 ('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첫째,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이하 "내부통제등") 책임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업무는 ①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 하여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②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 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③ 건전성 관 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하 고,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 부통제기준등")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기준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내부통제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 업무 예시 (시행령 별표 1의2 일부) >

구분	① 책임자를 지정하여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②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❸ 경영관리 관련 업무
업무	·내부통제등 총괄관리 ·내부감사 ·준법감시 ·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 ·정보보안 ·내부회계관리 등	·여신·수신 ·투자매매·중개 ·집합투자 ·신탁 ·보험계약체결·인수 ·신용카드업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인사·교육 ·보수 ·고유자산운용 ·건전성 관리 ·업무위수탁 ·자회사 관리 ·광고 등

<sup>※</sup> 업무는 예시로 열거하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마련시 예시 업무를 각 회사별 조직,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작성

둘째,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하였다.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하였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24.7.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

은행	지주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종금사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sup>\* □ 1</sup>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 □ 2단계(1년) → □ 3단계(2년) → □ 4단계(3년)

셋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하였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지배구조법 시행령」및「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13일(화)부터 3.25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7.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하여 검토·안내할 예정으로,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지주

####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2,13일(화) ~ 2024,3,25일(월), (41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jeongchanlee@korea.kr 팩스: 02-2100-2849
  -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